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농협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적용〉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29호)

2023.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4. 13.

다. 회 부 일 : 2022. 4. 14.

II.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약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약 5만 3,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는 약 231만 7,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대 선이 붕괴된 4.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 대도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후계농어업의 육성·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이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8조의5).

나.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9조의3).

IV.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이용고 배당소득 ○ 한도: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세율: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 이후 1년간('26. 1. 1. ~ 12. 31.)은 5% 분리과세하고, 그 이후('27. 1. 1. ~)에는 9% 분리과세 함 * 2022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기한 연장	☐ 후계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세율: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 이후 1년간('23. 1. 1. ~ 12. 31.)은 5%(후계농업인 1%) 분리과세하고, 그 이후('24. 1. 1. ~)에는 9%(후계농업인 5%) 분리과세 함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조합원·회원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 ○ 한도: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 세율: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 이후 1년간('26. 1. 1. ~ 12. 31.)은 5% 분리과세하고, 그 이후('27. 1. 1. ~)에는 9% 분리과세 함 * 2022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기한 연장	☐ 후계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세율: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 이후 1년간('23. 1. 1. ~ 12. 31.)은 5%(후계농업인 1%) 분리과세하고, 그 이후('24. 1. 1. ~)에는 9%(후계농업인 5%) 분리과세 함

* 정점식의원안 2022. 4. 13. 발의(의안번호 15229)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조합 등에 대한 조합원등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배당소득), 20세 이상 조합원등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¹⁾.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에 200만원을 한도²⁾로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등 6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됨.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100만원을 한도³⁾로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11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또한, 2020년 세법개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 제한조항⁴⁾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 적용

1) 개정안 발의 당시에는 2022년까지

2) 비과세 한도는 1987년 500만원, 1991년 1천만원으로 인상됨(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Ⅲ)-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8. 9., p. 89.).

3) 비과세 한도는 1978년 500만원, 1987년 1천만원, 1991년 2천만원, 2009년 3천만원으로 인상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

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3,76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저축지원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규모임.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전망)	2023년(전망)
금액	5,859	4,863	3,760	3,432	3,69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2023년에는 5% 분리과세, 2024년 이후 9% 분리과세가 예정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⁵⁾에 따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취지임.
-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1% 분리과세, 2024년 이후에는 5%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정안 발의 이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 기한이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되어, 2026년 1%, 2027년 이후 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농림어가의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림어가의 인구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축소되고 있음.

반면, 2021년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7.1%인데 비하여 농가는 46.8%(2020년 42.3%), 어가는 40.5%(2020년 36.0%), 임가는 44.2%(2020년 37.7%)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농가·어가 및 임가인구 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가	2,422 (4.7%)	2,315 (4.5%)	2,245 (4.3%)	2,314 (4.5%)	2,215 (4.3%)
어가	121.7 (0.2%)	116.9 (0.2%)	113.9 (0.2%)	97.1 (0.2%)	93.8 (0.2%)
임가	195.5 (0.4%)	189.2 (0.4%)	178.4 (0.3%)	232.8 (0.4%)	219.0 (0.4%)

주: 괄호안은 전체 인구 중 해당분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유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착 및 창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방식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이 계속 연장되어 옴에 따라 비과세 이후 저율분리과세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바가 없었으므로, 2025년 일몰기한에 맞추어 동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55